실험실창업 교내 프로세스 안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실험실창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지재권 현물출자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재출자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전문가들의 경영지원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 → 창업을 원하는 교원과 상담 후 사업화 방식을 결정 함.
- → <u>실험실 창업</u>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본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 함.

- 1 창업아이템 선정
- 창업 아이템 및 업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 2 교원 겸직신청
- 전임교원 대상

- 3 실험실창업 신청
- 대상기술 리스트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4 무상임대 신청

• 교원 명의로 배정 된 연구실 및 실험실

5 법인 설립

• 법인 사업체 관할 등기소

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7 기술사업화계약체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3. 실험실창업 교내 제출서류 안내

실험실창업 교내 프로세스 안내

1

교원 겸직신청

- 단과대학-> 교무팀 공문신청
- 별표 제2호 겸직허가신청서

→

• 처리 : 교무팀(내선0053)

• 규정: 교원겸직 허가지침

2

겸직승인 이후 실험실창업 신청

- 서식2 실험실창업 허가신청서
- 서식3 실험실창업 사업계획서
- 서식4 실험실창업 대상기술리스트

->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1345)

• 규정 :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3

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무상임대차계약서 발급

• 무상임대차계약서 초안 기술사업화센터 작성 후 송부>

•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1345)

• 협조부서 : 관재처 관재팀

4

창업자(교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 법인사업체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 벤처기업확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or 중소기업진흥공단

 \rightarrow

• 처리 : 창업자(교원) 직접 등록

기술사업화계약서(실험실창업) 계약체결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화센터에 송부
- 자본금 및 주식현황 확인 후 기술사업화계약서 작성
- 겸직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주식 10% 무상기부

学。

•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1345)

기술사업화 계약서 계약체결 상세내용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화센터에 송부
- ② 대상기술(특허 및 노하우) 확인
- ③ 자본금 및 주식현황 확인 후 기술사업화 계약서 초안 작성
- ④ 개인정보 및 주식기부내역 확인 후 창업회사 직인 날인
- ⑤ 최종 기술사업화 계약서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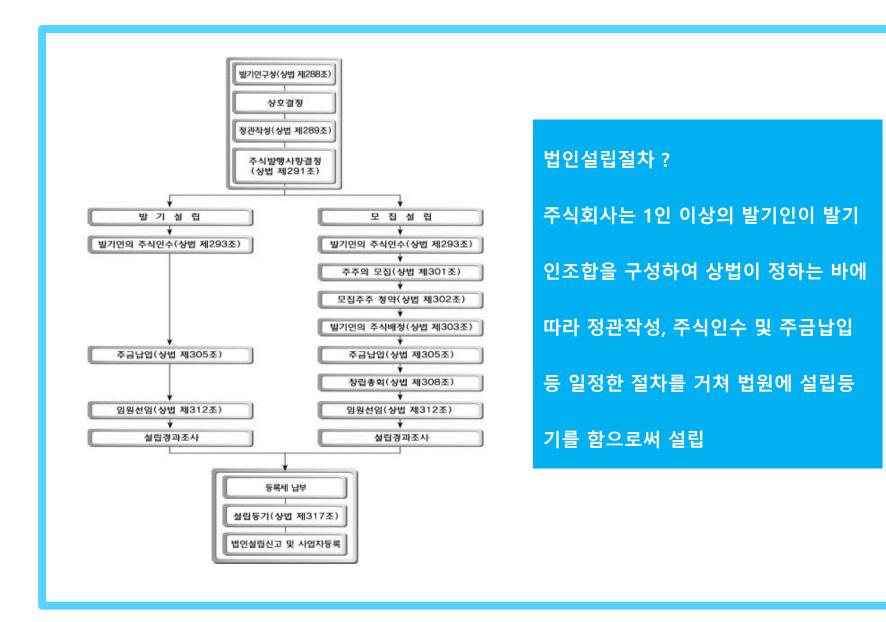
- 처리 :기술사업화센터(내선1345)
- 겸직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주식 10% 무상기부
 추후 명의개서 된 주주명부 제출
- 매년 회사현황 및 매출액 조사

◇ 법인설립 체크포인트

- 1) 법인형태결정: 경영특성과 자본규모에 따라 결정
- 2) 목적사업: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
- 3) 자본금 규모 : 자금조달시기 및 사업
-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 발기인 수 무제한, 1주이상
- 5) 상호결정 : 관할 등기소에 사용가능 여부 확인
- 6) 본점 소재지 : 학내 공간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 정관작성, 법인설립절차등 이행
경영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책임신속한 의사결정경영능력의 한계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유한,무한책임)의사결정의 저속성소유와 경영의 분리가능
기업주활동	• 기업주활동의 자유	•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 기업의 영속성 결여	•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소득세 과세 일정규모이하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 본인의 급여 불인정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법인세 과제 대표자의 급여 인정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증빙징취 등의 엄격성 요구
기타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대외 신용도 취약창의 노력의 극대화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대외적인 신용 유리경영관리의 효율성



1.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실질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

2.상호결정

- "주식회사"등과 같은 회사형태를 반드시 표기
- 대법원 홈페이지(<u>www.iros.go.kr</u>)를 통하여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 조회

3.정관작성

- 발기인은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규모 들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4.주식발행 사항 결정 • 회사 설립 시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

5.정관의 인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인정

6. 발기설립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출자의 이행
- 이사 및 감사 선임
- 설립경과 조사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 주식의 배정과 인수
- 7.모집설립 주식대금의 납입
 - 창립총회
 - 설립경과조사

8.등록면허 세 납부

구분	등기 등록 종류	세율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등가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1) 법인설립등기 시기:

- 발기설립 등기시기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한날로부터 2주이내)
- 모집설립 등기시기 (창립총회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이내)
- 2) 신청장소 및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 3)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①정관, ②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주식청약서, ④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⑤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등, ⑥발기인 회의록, ⑦창립총회의 의사록
 - ⑧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⑨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서, ⑩벤처기업확인서(창업 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 회사설립을 위한 창업가이드, 사업인허가, 회사설립 절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회사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설립 시스템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벤처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벤처기업우대제도

창업

교수 연구원창업 휴직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코스닥 상장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기타 추가 지원내역은 홈페이지 확인!

벤처인

• 벤처확인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벤처인 회원으로 가입(www.venturein.or.kr)

벤처확인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

유형선택 및 신청서작성

- 벤처확인 유형
- 1. 벤처투자기업
- 2. 연구개발기업
- 3.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 4. 예비벤처기업

확인기관 의뢰

•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 선택하여 신청 완료

기업정보 공시

• 확인기관->신청서접수->서류접수/방문실사->확 인결과등록->공시정보등록->벤처기업인증서발급 기타 법인설립 및 사업장 등록 등 추가문의는

기술사업화센터 오승재 (내선1345)로 연락바랍니다